사무처 운영규정

(사)대한육상연맹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육상연맹(이하 '연맹'라 한다)의 정관 제56조 규정에 의 거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사원의 취업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① "사원"이라 함은 2장 9조에서 정한 채용기준 및 절차에 의해 채용되어 연맹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.
 - ② "상사"라 함은 업무 수행상 직·간접으로 자기를 지휘·명령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"소속 부서장"이라 함은 소속부서 및 이에 준하는 조직단위의 장을 말한다.
- 제4조(균등처우) 모든 사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처우를 받으며 국적, 성별, 신앙, 학력, 신분, 직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
- 제5조(법령과의 관계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 또는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인 사

- 제6조(인사권) 사원의 인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이를 행한다. 단, 그 일부를 인사담당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7조(사령장) 인사의 발령은 사령장 또는 발령통지서, 기타 이에 준하는 사내문서에 의하여 행한다.
- 제8조(인사고과) 모든 사원은 직무수행에 따른 능력개발 및 능력중심의 인사구현을 위하여 소 정의 방법에 따라 업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인사 고과를 공정하게 받는다. 세 부 시행 사항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담당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결정한다.

제9조(채용)

- ① 사원은 소정의 기준에 달하는 자 중에서 전형에 의하여 채용한다.
- ② 사원의 채용을 위한 채용기준, 전형방법, 기타 절차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인사 담당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결정한다.
- ③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,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 단, 직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수습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

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직무경력이 있는 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경력 년수 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. 단,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채용부분의 경력 필요성, 경력의 적합성 및 개인의 능력, 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인사위원회의 설치)

- ① 사원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인사 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인사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사원의 신규 채용, 승진
 - 2. 사원의 포상 및 징계
 - 3. 기타 사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
-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한다.

제11조(채용취소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수습기간 중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은 자
- 2.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관계 서류 제출을 기피하는 자
- 4. 허위의 사실로서 채용된 자
- 5. 수습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취소를 한 자
- 6. 제13조(자격규제) 각호에 해당됨이 발견된 자

제12조(구비서류)

- ① 사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.
 - 1. 지원서(소정양식)
 - 2. 이력서
 - 3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 - 4. 주민등록 등본
 - 5. 경력증명서 (필요에 따라)
 - 6. 신체검사서 (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)
 - 7.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(필요에 따라)
 - 8. 기타 연맹이 정하는 서류. 다만, 제 6. 7 및 8호의 서류는 채용 후 구비케 할 수 있다.
- ②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 및 경력, 병역, 신원관계 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.

제13조(자격규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5. 기타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

제14조(보직) 보직은 직급에 따라 각자의 능력, 경력, 본인의 희망 등을 참작하되 연맹의 필요 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5조(승진, 승급) 사원의 승진, 승급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6조(정기승급)

- ① 사원의 정기승급은 1회 1호봉을 원칙으로 하고, 1개 호봉 승급 소요기간은 12개월로 한다
- ②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, 7월 1일에 시행한다.

제17조(특별승진, 승급)
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승진, 승급 외에 특별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있다.
 - 1.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공로가 있는 자
 - 2. 재해, 풍수해 기타 천재지변을 당하여 연맹의 재산방호에 공로가 있는 자
 - 3. 기타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히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
- ② 특별승진 및 승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, 제16조의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.

제18조(승진 및 승급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승진 및 승급을 할 수 없다.

- 1. 견책 및 근신 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2. 감봉 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3. 정직된 자로 복직 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인사고과(제2장 9조)에 의해 승진, 승급이 제한된 자
- 5. 승진 대상 기간 내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총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

제19조(휴직)

-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3개월의 범위 내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단, 제2호의 경우 그 해당기간으로 한다.
 - 1. 업무 외 질병, 부상,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병역법,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 되었을 때
 - 3. 연수, 직무 등의 사유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연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주지, 신분관계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맹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20조(육아휴직)

- ① 연맹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 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.
-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- ③ 연맹은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

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.

④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,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복직)

- ①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, 휴직기간이 경과한 후 7일 전 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해 3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연맹은 휴직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.

제22조(근속기간의 계산)

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. 다만, 제 19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 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.

제 3 장 직 제

제23조(직능분류)

- ① 사원의 직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- 1. 사무직
- 2. 별정직(전임지도자)
- 3. 계약직
- ②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호의 직제 외에 촉탁 및 임시사원을 둘 수 있다.
- ③ 별정직은 연맹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사무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채용을 한시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.
- ⑤ 사무직, 별정직 및 계약직의 직급은 별도로 정한다.
- ⑥ 별정직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24조(기구)

- ① 연맹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.
- ② 사무처에 부, 실, 과 또는 파트를 둘 수 있다.
- ③ 회장은 사무형편상 필요에 따라 사무국 기구를 신설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.

제25조(분장업무 및 전결사항) 각 부서의 분장업무 및 위임전결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장 복 무

제26조(복무규율) 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을 엄수 하여야 한다.

- 사원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2. 부서장은 항상 사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친절히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여야 한다.
- 3. 항상 명랑 활발한 태도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경영이념의 구현과 회사의 목적 및 경영원칙 의 달성에 적극 협력한다.
- 4. 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기타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 서와 규율을 엄수한다.
- 5. 항상 자기직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각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교양의 습득에 적극 노력한다.
- 6. 공사의 분별을 명확히 하고 항상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와 우애를 지킨다.
- 7. 항상 시간과 규율을 엄수, 존중하고 직무를 신중, 신속, 정확히 처리한다.
- 8. 연맹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오손하는 언동을 하지 않는다.
- 9. 연맹의 영업 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이고 퇴직 후라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제3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10.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리를 취하지 않는다.
- 11. 연맹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집회,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.
- 12. 소속부서장의 허가 없이 자기의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않는다.
- 13. 개인을 위해 연맹의 명칭,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.
- 14.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사례, 향응 또는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.
- 15. 연맹의 시설을 애호하고 자재, 소모품, 기타 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한다.
- 16. 연맹의 청결, 정돈 및 도난,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보건에 적극 협력한다.
- 17. 연맹의 허가 없이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.
- 18. 연맹의 허가 없이 타 직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.
- 19. 기타 본 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27조(파견)

- ① 회장은 사원을 타 경기단체 및 유관단체에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.
- ②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사원은 연맹의 사원에 준하여 복무를 관리한다.

제28조(근무시간)

- ① 1주간의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, 1주일간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.
- ②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,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:00시부터 18:00시 까지로 한다. 단, 휴게시간은 12:00시부터 13:00시까지로 하며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연맹은 전 사원이 매일 1.5시간(월32시간)의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월48시간(월 32시간의 1.5배수)의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.

제29조(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) 사무처장이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, 근무 명령을 받은 사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
제30조(근태)

- ① 사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, 지각 또는 조퇴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1조(휴일)

- ①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정한다.
- 1. 법정 공휴일
- 2. 근로자의 날
- 3. 연맹이 휴일로 정하는 날
- 4.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
- ② 연맹은 업무 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항의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 할수 있다. 대체된 휴일은 평일로, 평일은 휴일로 간주한다.

제32조(휴가의 종류)

- ① 사원의 휴가는 정기휴가, 연차휴가, 병가, 공가,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휴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 5일 이내로 한다.
- ③ 사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가원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연차휴가에 한해 청구한 시기가 업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분할하여 줄 수 있다.

제33조(연차휴가) 근로기준법에 의한다.

제34조(연차휴가의 사용)

- ①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치하여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,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실시시기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휴가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연차휴가는 1회에 7일을 넘지 못하되, 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③ 사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연맹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.
- ④ 연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.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 단서 규정의 시행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른다.
- ⑤ 제 38조에 의한 연차휴가 중 미 사용일수에 대하여는 그 해당 일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며, 지급 시기는 다음해 2월 급여지급 시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제35조(병가)

-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개월의 범위 내 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허가할 수 있다.
-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6조(공가) 공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허가 하여야 한다.

- 1.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, 소집, 검열,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할 때
- 2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- 3. 천재지변, 교통차단 등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- 4.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, 법원, 검찰,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출석할 때
- 5. 직무상의 상병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
- 6. 기타 연맹이 인정하는 경우

제37조(특별휴가)

- ① 사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휴가를 얻는다.
- 1. 결혼 : 본인 7일, 자녀 1일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- 2. 회갑 : 본인 및 배우자 5일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
- 3. 출산 : 배우자 2일
- 4. 사망 : 배우자 7일, 자녀 6일, 형제자매 3일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6일 백숙부모 3일, 형수 제수 배우자 및 형제자매 1일
- 5. 탈상 : 배우자 2일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, 형제자매 1일
- 6. 기타 : 본인 거주지가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7일
- ② 제 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.
- ③ 임신 중의 여사원은 출산일 전후를 통하여 3개월(90일)의 휴가를 주며 2개월은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1개월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, 유산하였을 경우 7일간의 휴가를 얻는다.
- ④ 여사원은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얻는다.
- ⑤ 업무상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고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별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, 국내 여비 규정상의 지급기준을 준용한 휴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38조(국내출장)

- ① 사원이 연맹의 업무(이하 '공무'라 한다)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.
- ② 출장 용무변경에 의하여 당초 목적지 외에 여행하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출장자가 귀임 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출장보고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9조(국외여행)

- ① 임직원의 공무로 인한 국외여행은 회장이 허가한다.
- ② 공무로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, 그 여행목적 및 결과보고서 등을 유관기관에 송부하여 동일 목적사업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.
- ③ 사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.

제40조(건강진단) 사원의 건강을 위하여 매2년마다 전사원에 대하여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

제 5 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

제41조(교육)

- ① 사원의 자질과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1회 이상의 자체교 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기간이 계속 1주일 이상일 때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교육성적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42조(성희롱의 예방)

- ① 연맹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,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 의 조치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.
- ② 연맹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③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.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.

제 6 장 급 여

제43조(급여구분)

- ① 사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1. 기본급여
- 2. 상여금
- 3. 수당
- ② 기본급여, 상여금 및 수당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③ 연장, 야간,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포괄 산정하여 급여로 지급한다. 단,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교통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한다.

제44조(급여계산)

- ① 급여는 임명, 전보, 승진, 승급 또는 감봉 등의 경우와 중도 입.퇴사 등 급여계산 기간을 전부 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- ② 급여의 지불기간 계산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으로 계산한다.
- ③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 또는 해직될 때에는 그 월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.
- 제45조(지급일)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사원이 퇴사하였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의 재량으로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46조(호봉책정) 신규채용인 경우의 호봉책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호봉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군복무 및 유사경력은 별도의 경력환산 기준표에 의한다.
- 제47조(파견자의 보수) 타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직의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. 다만 파견지에서 본직의 수당과 같거나 유사한 수당을 지급 시 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제48조(수당의 종류) 사원에게는 기본급 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49조(상여금 및 성과금)

- ① 근무성적,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 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상여금 및 성과금의 지급기준,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장 상 벌

제50조(표창) 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이를 표창한다.

- 1.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
- 2. 특히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여 현저한 공적을 인정받은 자
- 3.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키로 된 자

제51조(징계)
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은 징계할 수 있다.
- 1.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
- 2.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
- 3.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맹에 피해를 입힌 자
- 4. 연맹의 명예 및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

- 5. 연맹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
- 6. 연맹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7. 정당한 이유 없이 연맹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
- 8. 연맹 조직 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켜 연맹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
- 9.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
- 10. 연맹이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
- 11.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
- 12. 무단결근이 연간 3일 이상이거나 지각이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
- 13. 근태사실을 위조하거나 연맹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중 취침한 경우
- 14. 연맹의 행사나 공공행사에 무단 불참하거나 행사를 비방 방해한 경우
- 15. 연맹의 비밀정보를 기록한 문서, 매체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
- 16. 연맹에서 도박·음주 행위, 연맹내외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
- 17. 연맹내 에서 유언비어로 타 직원을 미혹케 하거나 고의로 업무 방해 및 태업을 한 경우
- 18. 연맹내 컴퓨터통신망을 비업무용으로 이용 및 이와 관련한 연맹의 제규칙을 위반한 경우
- 19. 내부 회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 또는 유출하거나 동 규정에서 정한 기 타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20. 기타 제27조의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징계 해고할 수 있다.
- 1. 부정한 방법이나 성명.연령.학력 등 중요한 이력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자
- 2. 업무상 상사의 지시.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.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
- 3. 사원 상호간 연맹 내 폭행.협박한 자
- 4. 고의로 태업.준법투쟁을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태업.준법 투쟁을 권한 자
- 5. 연맹의 기밀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연맹의 물품 및 자료 등을 무단 반출하는 자
- 6.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
- 7. 타인의 물건을 절취 횡령하거나, 법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
- 8. 무단결근 월3일 또는 연 7일 이상이거나 연속 3일 이상, 지각이 연 20회 이상인 자
- 9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맹의 재산을 손실케 한 자
- 10.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
- 11. 뇌물 방지 및 관련법을 위반하여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- 12. 제1항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반복되거나 제1항의 징계 사유가 여럿 중복되어 그 정도가 심한 경우
- 13.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
- 14. 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자
- 15. 기타 전기 각호에 준하는 불미한 행위를 한 자
- ③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
- 1. 견책 :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.
- 2. 감봉 : 기간을 정하여 1호봉 또는 그 이상의 급호를 삭감함을 말한다.
- 3. 정직 : 사원이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직자는 사원으로서의 신

분은 유지하고,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4. 해고 :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.
-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, 감액은 기본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 제수당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.
- 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, 그 기간 중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는 종사 못하며, 기본급여만 을 지급한다. 제수당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한다.
- ⑥ 사원의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.
- 1.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2회 이상의 진술기회를 부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 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들의 심의만으로 징계를 결정한다.
- 2.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사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- 3. 징계 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평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⑦ 이 규정에 의한 징계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- ⑧ 본 조 제2항 14조에 해당하는 징계는 **별표** 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감경할 수 없다.

제52조(예외)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징계 또는 해고 조치 할 수 있다.

- 1.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사유가 명백한 경우
- 2. 징계 대상자가 형사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
- 3. 징계 대상자가 3일 이상 행방불명 된 경우
- 4. 근무성적 또는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평가된 경우
- 5. 기타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

제 8 장 퇴 직 및 해 고

제53조(퇴직)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사 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제54조(정년퇴직)

- ①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 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연령에 도달한 당해 연도 생년월일이 6월 이전인 자는 6월 30일에, 7월 이후인 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.

제55조(명예퇴직)

①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. 단, 연맹의 사정상 부득

- 이한 경우에는 명예 퇴직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1.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2.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3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
- ③ 명예퇴직을 하고자하는 자는 명예 퇴직원을 첨부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하며, 명예퇴직수 당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56조(퇴직금)

- ① 연맹의 사원으로서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및 위로금을 퇴직금에 지급할 수 있다.
- 1. 회사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
- 2. 순직자 및 공상 병으로 퇴직하는 자
- 3. 명예퇴직 하는 자

제57조(퇴직적립금)

- ① 퇴직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연맹에서 출연하는 퇴직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로서 조성하며, 이를 별도계정으로 관리한다.
- ② 연맹은 퇴직금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제58조(지급액의 계산)

- ① 퇴직금은 근속년수에 1개월분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.
- ②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이전 3개월간에 퇴직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.
- 제59조(근속년수 계산) 근속년수는 발령일로 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년수를 계산하고 잔여 월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한다. 잔여월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근속일수/365로 계산한다. 다만 재직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1년으로 한다.
- 제60조(수령권자)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유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1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.
- 제61조(지급일)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한다.
- 제62조(중간정산) 사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- 제63조(당연면직) 사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한다.

- 1. 금치산,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
- 2.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
- 3. 형사 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판결된 경우단, 교통사고의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- 4.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
- 5. 정년에 달한 경우
- 6. 사망한 경우
- 7.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8. 휴직기간 중 회사의 승인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한 경우
- 9. 군 입영 휴직자가 복무연장을 신청하여 의무복무 기간을 초과한 경우
- 10.본인이 퇴직을 원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경우
- 11.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

제64조(해고의 제한)

-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.
- ② 산전·산후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.

제65조(해고의 통지)

- ① 사원을 해고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)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,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.

제66조(해고예고의 예외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.

- 1. 일용 사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
- 2.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
- 3. 월급제 사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
- 4. 단기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
- 5. 수습기간 중인 자(3개월 이내)
- 6.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

제67조(퇴직수속)

- ①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예정일 14일전에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이 있을 때 까지 계속하여 담당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. 단, 이 기간은 퇴직원 제출 후 익 월을 초과하지 않는다.
- ② 사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퇴직일로 한다.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

사망일을 퇴직일로 본다.

제68조(업무인계) 사원은 전근, 주재, 직무변경, 해고, 퇴직의 경우에는 관장하였던 일체의 도구 및 대여 품을 반납하고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.

제 9 장 여 비

제69조(여비) 연맹의 임원·사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연맹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

제 10 장 재 해 보 상

제70조(보상) 사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1 장 계 약 직

제71조(채용 및 자격)

-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은 연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원 외로 운영되는 분야에 한하며, 채용자격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② 계약직 직원의 채용정원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책정하거나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며, 채용 계약조건 등을 정한 필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담당부서에서 채용한다.
- 제72조(계약기간) 계약직 직원의 채용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회계연도 중 채용된 자의 최장의 임용기간은 당해년도 말까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계약 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익 년도의 정원, 필요 부서장의 의견,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 하여 최초 계약일로 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 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재계약 할 수 있으며, 사업이 종료될 경우 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로 본다.

제73조(결격사유 및 계약의 해지)

- ① 임용권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수 없다.
- ② 임용권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
- 2. 신체,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
- 3. 계약의 목적사업이 취소되거나 종료된 때
- 4.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
- 5.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(단, 업무이외의 사유로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)
- 6.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된 때

제74조(복무 및 평가)

- ① 계약직 직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의 제 준수사항과 채용계약조건에서 정한 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임용권자는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, 재 계약 또는 해지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12 장 보 칙

제75조(규정제정 및 준용) 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(2010.10.14.)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회장 승인(2016.06.21.)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(2023.6.27.)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 「음주운전 징계기준」<신설>

음주운전 유형			처리기준	비고
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미만인 경우		감봉	1. "음주운전"이란 「도로교 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 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 을 말한다. 2. "음주측정 불응"이란「도 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
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이상 0.2퍼센트 미만인 경우		정직	
	혈중알코올농도가 0.2퍼센트 이상인 경우		<u>해고</u> - 정직	
	음주측정 불응의 경우		<u>해고</u> - 정직	
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		<u>해고</u> - 정직	한 것을 말한다.
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		<u>해고</u>	3.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		정직	때에는 본 규정의 시행일 인 2021.12.27. 이후 행한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		<u>해고</u> - 정직	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. 4. "운전업무 담당 직원"이
	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		<u>해고</u> - 정직]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사망사_	사망사고의 경우		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
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 하가 있는 교 통사고를 일으 킨 경우		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	<u>해고</u> - 정직	을 말한다. 단, 운전업무 담당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 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	피 사고 후 「도 1 로교통법」		<u>해고</u>	
운전업무 담당 직원이 음주은 전을 한 경우	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		<u>해고</u>	
	2		<u>해고</u> - 정직	